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의 리스크 확인 지침

2016. 8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

대한산업안전협회 김성빈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김성익
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9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4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등 반영)
- 2016년 6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CEN: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- Design calculation-Stability criteria-Construction-safety-Examinations and tests(Final Draft prEN 280)
- KS B ISO 16368 : 이동식 승강 작업대(MEWP) 설계계산,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
- KOSHA Guide M-86-2011 :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
- ANSI: Vehicle-Mounted Elevating and Rotating Aerial Devices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, 같은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-20호,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164호,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-11호, 안전검사 고시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8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의 리스크 확인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작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이삿짐운반용 리프트"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을 따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써 화물자동차 등의 차대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(나) "적재하중(Movable load)"이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 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X - 36 - 2016

4. 이삿짐 운반 작업 리스크

- 4.1. 작업 시작 전 리스크 관리
- 4.1.1. 일반 유해위험요인
 - (1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임의로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.
 - (2)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, 물체,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(3)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(4)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.
 - (5)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이용하여야하며 최대 허용 경사 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.
 - (6)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지역 내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.
 - (7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 는 실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(8) 작업을 위해 필요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운반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9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- (10) 붐이나 운반구의 일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- (11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X - 36 - 2016

- (12) 조작레버는 중립 또는 차단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.
- (13) 이상 발생 시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"사용금지"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(14)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엔진이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연료주입 장소는 화재·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.

4.1.2. 작업조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

- (1) 바람의 풍속이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2) 붐대를 조작하기 전에 주변의 고압전선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사다리 붐대의 각도는 제작사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사다리를 단단한 곳에 지지한 후에 운반구를 작동시켜야 한다.
- (5) 도로 주위나 아파트 단지 내의 작업 반경 내에서는 화물 추락 및 전복의 위험이 상 존하고 있으므로 접근 또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6) 제작사의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각도 이하에서 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.
- (7) 운반구의 화물은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하로 적재하여야 한다.
- (8) 사다리를 인출하기 전에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여야 하며 아웃트리거 잭이 지면에 평탄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사다리를 공중에 띄우거나 건물 벽과 떨어져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.
- (10) 운반구에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11) 급상승, 급정지 또는 급선회 등의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4.1.3. 작업 높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

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탑재 차량(톤)의 경우 작업 최대높이를 고려하여 제작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. 다음 <표 1>은 이삿짐 운반 등 리프트의 탑 재 차량별 최대작업높이에 대한 예시이다.

<표 1>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탑재 차량(톤)의 작업 최대 높이(예시)

탑재 차량(ton)	최대 작업 높이 ^{주1)}	작업 가능 아파트 층수	비고
1	18 m 이하	6층 이하	
1.4	28 m 이하	10층 이하	
2.5	32 m 이하	12층 이하	
3.5	42 m 이하	15층 이하	
5	53 m 이하	21층 이하	
	62 m 이하	25층 이하	

주1) 국내 제조사들의 차량(톤)별 사다리 높이 제작기준

4.2. 작업 중 리스크 관리

4.2.1. 운전 중 유해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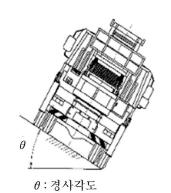
- (1) 조작 레버의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천천히 작동하여야 한다.
- (2) 조작 중에는 운반구 주위의 위험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.

4.2.2. 주행 중 유해위험요인

- (1) 장거리 주행 시에는 붐 설치 잠금 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하여야 한다.
- (2)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을 동시에 하지 않으며 고속주행 시 급선회, 급정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(3) 주행 시에는 차륜의 진행 방향과 주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X - 36 - 2016

- (4) 붐은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시켜야 한다.
- (5) 지반이 무르거나 요철이 큰 도로면과 <그림 1>과 같이 경사각이 제작사의 설계기 준 이상인 도로 등에서는 주행하지 않아야 한다.



<그림 1> 주행금지 각도

- (6) 후진할 때에는 유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- (7) 목적물에 근접하게 운반구를 접근시키고자 할 때는 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붐신축과 선회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8) 터널, 육교, 도로의 표지판, 전선 등의 장애물이 있는 도로를 운행할 때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탑재 높이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.

4.3. 작업 후의 유해위험요인

- (1) 붐 및 암을 내리고 운반구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2) 주차는 지정된 장소에 하여야 한다.
- (3) 비탈진 장소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.

X - 36 - 2016

- (4) 엔진을 정지하기 위하여 무부하 운전을 실시 후에 정지하여야 한다.
- (5)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하고 키를 뽑아 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.

5. 리스크 확인 방법

작업 시 안전 및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5.1.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 - (1) 작업시작 전에 <별표 1>의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 - (2) 붐의 기복, 늘리고 줄이고, 선회, 주행 등의 기능은 물론 운반구의 수평기능과 수평 작동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5.2. 월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 - (1)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.
 - (2) <별표 2>의 월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.
- 5.3. 연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 - (1) 매년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
 - (2) 장비 등의 마멸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5.4. 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 - (1) 기계적 리스크 확인은 5.1.(1)의 사항을 사다리 붐 조립체, 턴테이블, 아웃트리거, 운반구, 동력 인출장치, 윈치, 도르래, 전기장치 등, 급정지장치 등의 작동 유무를 <별표 3>과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.

X - 36 - 2016

- (2) <별표 3>과 같이 작업조건에 대해서 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사전에 기상 예보, 작업 장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작업시작 전 (1)에서 (3)까지의 관련되어 기계적 또는 작업 환경조건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
6. 문서화

작업계획, 리스크 확인일, 작업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, <부록 1>의 양식을 참조한다.

<별표 1>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
작업니	8						
유해위험요인 확인일				시행일			
연번 점검 부위		점검항목		적정여부 (O/X)			
1	유압 1 발생장치		펌프	오일 누설 ^c 공기흡입이	없는가?	·가? 이 충분한가?	
		작동유 탱크			설이 없는가' 동레버의 ^조	? 남동상태가 양호한가?	
2	조작장치		조작 밸브 하부 조작부	오일 누설 c 계기판 및	이 없는가? 표시 등의	작동상태가 양호한가? 의 작동상태가 양호한	
3	선회장치	차대 균열, 변형 및 손상이 없는가? 선회대 균열, 변형 및 손상이 없는가?					
4	선회장치		·속기/모터 선회베어링	작동상태가 오일의 누석 작동상태가	양호한가? 널이 없는가 양호한가? 널이 없는가	?	
	.,,	신 기 ()	분 분 일란더	균열, 변형 작동상태가 오일의 누석	및 손상이 양호한가? 설이 없는가'	없는가?	
5 신축장치	がて ^い	터밸런스 밸브 체인	링크 및 핀	곳이 없는가' 의 절단이 '	없는가?		
	외	-이어 로프	심한 변형이나 마모가 없는가? 연결부의 파손이 없는가?				
6 분 기복장치				작동상태가 오일 누설이 자연하강이			
	기숙상시	카운1	터밸런스 밸브	, , ,	양호한가? 력이 없는가'	?	

<별표 1>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(계속)

연번	점검 부위		점검항목	적정여부 (O/X)									
			타이어 압력 및 손상이 없는가?										
		타이어 림	림 체결용 볼프 너트의 체결상태가 양호한 가?										
7	주행장치		작동상태가 양호한가?										
		주행 감속기 모터	오일의 누설이 없는가?										
			주행 감속기의 부의 볼트 체결상태가 양호 한가?										
8	조향장치	고하시리다	작동상태가 양호한가?										
0	工 % 3 4	조향실린더	오일의 누설이 없는가?										
		배터리	액량을 점검하였는가?										
		연료탱크 및 오일탱크	연료 및 오일의 누설이 없는가?										
		압력필터	필러 엘레멘트의 오염상태가 양호한가?										
9	엔진	엔진 라디에이터	냉각수를 점검 하였는가?										
		다니에 이디	냉각수의 누설이 없는가?										
											엔진속도조절장치	작동상태가 양호한가?	
		엔진 오일	오일량을 점검하였는가?										
		차체 경사 감시장치 간접장치 긴급정지장치	작동상태가 양호한가?										
1.0	41 -1 -2 -2		엔진정지에 이상이 없는가?										
10	안전장지 		풋 스위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한가?										
		비상용 펌프	작동상태가 양호한가?										
		100 4=	오일의 누설이 없는가?										

<별표 2> 월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
작업내	।						
유해위험요인 확인일				시행일			
연번 점검 부위			점검항목		적정여부 (O/X)		
	수상되게	펌프		취부 및 볼트의 체결상태가 양호한가?			
1	유압발생 장치	작동유 탱크		본체의 변형 및 균열이 없는가?			
	0 / 1	70	T 32	작동오일이	오염되지 :	않았는가?	
2	2 조작장치		작 밸브	가?	스 연결부의 양호한가?	의 풀림과 열화가 없는	
		상·하부 조작부		설치상태가	양호한가?		
3 선회장치		감속기/모터		배관 및 호 가? 감속기 및 호한가?		의 풀림과 열화가 없는 보트의 체결상태가 양 가?	
		선회베어링		오일의 누석	설이 없는가'	?	
4	붐 신축장치	붐	연결핀의 취부상태가 양호한가? 인출 및 인입부의 손상 및 급유상태가 양호 한가?				
5 기복장치	신축 실린더 카운터밸런스 밸브 체인			부의 풀림이 파 및 변형 ං			
				는가? 멸이 없는기 양호한가?	}?		
		A1 . 2			나 마모가	•	
		와이역	거 로프		화손이 없는 양호한가?	7ト?	

<별표 2> 월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(계속)

연번	점검 부위		점검항목	적정여부 (O/X)
			연결부 핀의 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6	붐	기복실린더	호스의 열화 및 변형이 없는가?	
O	기복장치		배관 연결부의 풀림이 없는가?	
		카운터밸런스 밸브	배관 연결부의 풀림상태가 없는가?	
		타이어 링	타이어 편심 및 이상마멸이 없는가?	
		다이의 형	이물질(금속, 돌 등)이 끼어있지는 않는가?	
7	주행장치		기어오일의 양 및 오염이 있는가?	
,	1 0 0 7 1	주행 감속기 및 모	설치상태가 양호한가?	
		터속도 변환밸브	배관 및 호스 연결부의 풀림과 열화가 없는	
			가?	
		조향 실린더	연결부 핀의 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	그 항 글린니	배관호스 연결부 풀림 및 열화가 없는가?	
		조향 허브 타이어 로드 및 링 크	변형, 휨이 없는가?	
8 조향장치	ス하자치		허브베어링의 균열 및 이상음이 없는가?	
	工 0 0 7 1		연결핀의 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		취부부 균열 및 풀림이 없는가?	
			휨 및 외관상의 변형이 없는가?	
		연결핀의 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	
		배터리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	연료탱크 및 오일	균열 손상이 없는가?	
	ر ما ما عا	탱크 취부상태가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9		압력필터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9 에진	<u>"'l'</u>	라디에이터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	엔진속도조절장치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	에어클리너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머플러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	
10 안전장치		차제경사감사장치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이렇지하	긴급정지장치	풋스위치 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안선상지 :	선장지 비상용 펌프	취부상태가 양호한가?	
			배관 연결부의 풀림이 없는가?	

<별표 3> 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

작업내	कु						
유해위험요인 확인일 시형		시행일					
구분	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 확인 사항				적정여부 (O/X)		
	1 /	사다리 붐 조	립체를 확인하였는가?				
기계 작동	② 턴테이블을 확인하였는가?						
	3 4	아웃트리거를	확인하였는가?				
	4	운반구를 확인]하였는가?				
	⑤ 동력 인출장치를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⑥ 윈치를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⑦ 도르래를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⑧ 전기장치를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⑨ 급정지장치를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① 작업 시작 전 풍속이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내인지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② 주변의 고압전선 등을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③ 운반구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는가?						
작업	④ 화물 추락 및 전복의 위험이 있을 때 통행금지 표시는 확인하였는가?						
환경 조건	⑤ 적재물의 형상이 균일한지 확인하였는가?						
	⑥ 작업의 높이 등을 확인하였는가?						
	7	⑦ 사다리가 건물과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?					
	8 -	운반구의 화돌	을 중량이 제작사의 설계기	기준을 충족히	· 나는지 확인하였는가?		

<부록 1>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작업 시 작업계획 작성 양식

1. 장비제원 (모델명, 붐길이, 정격하중 등)					
2, 작업조건 (지반상태, 주변, 고입	2, 작업조건 (지반상태, 주변, 고압선 등)				
3. 작업내용 (작업반경, 높이, 적재하중 등) 및 작업방법					
4. 해당작업에 따른 위험예방대책(떨어짐·넘어짐·맞음·끼임 등)					
리스크 확인일					
작업일					
점검자	(인)				